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6
----------	-----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7일

발 의 자 : 이호대, 이태성, 권영희, 이광호,
유 용, 김화숙, 김제리, 이현찬,
이정인, 이준형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 거주 의사상자는 146명(의사자 85, 의상자 61, '19년 1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예우와 지원은 의사상자 특별위로금과 기념포석 설치 정도임.
- 이에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동물원, 서울식물원 등의 유료 공원과 서울시 소유의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의사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등에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과 공연장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호).
- 나. 약칭과 알법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수정함(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영주차장”을 “공원 입장료, 공연장 이용료,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을 “「법」”으로, “상당한”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을 각각 “「법」”으로 한다.

제7조 중 “법”을 “「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을 “「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별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 라. (생략)

제7조(지원신청) 별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으로 인정된 사람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

2. ----- 「별」-----

-----.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신청) 「별」-----

-----.

제8조(준용 등) ① -----

「별」-----.

② (현행과 같음)

다. 비용추계 전제

- 2019년 1월 현재 서울시 거주 의사상자는 146명(의사자 85, 의상자 61)이므로 향후 인원 증감은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 의사자 유족은 선순위자가 모두 배우자이고, 그 자녀들은 2명으로 가정
 - 의상자는 부상등급이 모두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고, 배우자 및 자녀가 아닌 활동보조자 1명과 동행하는 것으로 가정
 -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는 3명이며, 의상자와 별도로 서울동물원과 서울식물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
-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배우자 및 자녀가 서울동물원과 서울식물원의 연간 이용 횟수는 각 6회로 가정
- 서울동물원 입장료는 어른기준 5,000원(2019.1월), 서울식물원 입장료는 어른 기준 5,000원(입장료 징수안 5,000원 ~ 10,000원, 2019. 5월 징수 예정)으로 하고 향후 금액은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라. 비용추계 산식

- 서울동물원 입장료 면제액 ≍ 16,800천원
 - 의사자 유족(85명×3명)×이용횟수(연 6회)×입장료(5,000원)=7,650천원
 - 의상자 수(61명×2명)×이용횟수(연 6회)×입장료(5,000원)=3,660천원
 - 의상자가족(61명×3명)×이용횟수(연 6회)×입장료(5,000원)=5,490천원
- 서울식물원 입장료 면제액 ≍ 16,800천원
 - 의사자 유족(85명×3명)×이용횟수(연 6회)×입장료(5,000원)=7,650천원
 - 의상자 수(61명×2명)×이용횟수(연 6회)×입장료(5,000원)=3,660천원
 - 의상자가족(61명×3명)×이용횟수(연 6회)×입장료(5,000원)=5,49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4

e-mail : liz1998@seoul.go.kr